## 예산총칙

## 예 산 총 칙

##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8,677,451	8,360,324
일반회계		258,894,692	7,766,841
특별회계		19,782,759	593,483
	공기업특별회계	11,038,893	331,167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038,893	331,167
	기타특별회계	8,743,866	262,31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92,003	14,760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96,090	29,88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177,364	65,321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328,409	9,85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50,000	142,500

-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40,000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8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